

교통운수부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 구역 실시방안 관련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 건설 병단 교통운수장(국,위원회), 각 직속 해사국, 장강 항해 업무 관리국, 주장 항해 업무 관리국 :

다음과 같이 <<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 구역 실시 방안 >>을 배부하오니, 성실하게 관철 바랍니다.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 구역 실시 방안

정부 방침을 중요히 관철하기 위해 국무원은 생태보호 ,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녹색 해운발전과 선박 에너지절약을 촉진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과 중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라, <<주삼각,장삼각,환보하이(베이징,톈진,허베이) 수역 선박 배출 제한 구역 실시 방안>>에 기초하여 본 실시 방안을 실행한다.

1. 작업 목표

선박 대기 오염 물질 배출통제구역(이하 배출통제구역) 설립, 선박의 유황물질, 황산화물,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연해와 내하(내륙RIVER) 항구 도시의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설립원칙

- (1) 환경개선과 해운경제의 조화 및 발전 등을 촉진하다.
- (2) 선박 대기오염물 배출통제 강화한다.
- (3) 국제협약과 중국법 표준요구 준수한다.
- (4) 단계적 실시와 선행 후 병행한다.

3.적용대상

본 방안은 배출 통제 구역에서 항해, 정박, 작업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4.배출제한구역 범위

배출 통제 구역을 지정하며, 연해 통제구역과 내하(내륙 RIVER구간) 통제구역을 포함한다. 연해 제한 구역의 범위는 표1에서 열거한 60개 지점의 연결된 선 이내 해역이며, 이 중 해남도 주변 수역의 범위는 표2의 20개 지점의 연결된 선이다. 내하(내륙 RIVER구간) 제한 구역의 범위는 장강간선, 서강간선의 통항수역, 위치 참조 좌표는 표 3이다.

표 1. 연해통제구역 해역 경계 위치 좌표

순서	경도	위도	순서	경도	위도
序号	经度	纬度	序号	经度	纬度
1	124°10'06.00"	39°49'41.00"	31	112°50'52.80"	21°22'25.68"
2	122°57'14.40"	37°22'11.64"	32	112°29'20.40"	21°17'12.48"
3	122°57'00.00"	37°21'29.16"	33	111°27'00.00"	19°51'57.96"
4	122°48'18.00"	36°53'51.36"	34	111°23'42.00"	19°46'54.84"
5	122°45'14.40"	36°48'25.20"	35	110°38'56.40"	18°31'10.56"
6	122°40'58.80"	36°44'41.28"	36	110°37'40.80"	18°30'24.12"
7	122°24'36.00"	36°35'08.88"	37	110°15'07.20"	18°16'00.84"
8	121°03'03.60"	35°44'44.16"	38	110°09'25.20"	18°12'45.36"
9	120°12'57.60"	34°59'27.60"	39	109°45'32.40"	17°59'03.12"
10	121°32'24.00"	33°28'46.20"	40	109°43'04.80"	17°59'03.48"
11	121°51'14.40"	33°06'19.08"	41	109°34'26.40"	17°57'18.36"
12	122°26'42.00"	31°32'08.52"	42	109°03'39.60"	18°03'10.80"
13	123°23'31.20"	30°49'15.96"	43	108°50'42.00"	18°08'58.56"
14	123°24'36.00"	30°45'51.84"	44	108°33'07.20"	18°21'07.92"
15	123°09'28.80"	30°05'43.44"	45	108°31'40.80"	18°22'30.00"
16	122°28'26.40"	28°47'31.56"	46	108°31'08.40"	18°23'10.32"

순서 경 도 위 도 순서 경 도 위 도

序号	经 度	纬 度	序号	经 度	纬 度
17	122°07'30.00"	28°18'58.32"	47	108°28'44.40"	18°25'34.68"
18	122°06'03.60"	28°17'01.68"	48	108°24'46.80"	18°49'13.44"
19	121°19'12.00"	27°21'30.96"	49	108°23'20.40"	19°12'47.16"
20	120°42'28.80"	26°17'32.64"	50	108°22'45"	20°24'05"
21	120°36'10.80"	26°04'01.92"	51	108°12'31"	21°12'35"
22	120°06'57.60"	25°18'37.08"	52	108°08'05"	21°16'32"
23	119°37'26.40"	24°49'31.80"	53	108°05'43.7"	21°27'08.2"
24	118°23'16.80"	24°00'54.00"	54	108°05'38.8"	21°27'23.1"
25	117°50'31.20"	23°23'16.44"	55	108°05'39.9"	21°27'28.2"
26	117°22'26.40"	23°03'05.40"	56	108°05'51.5"	21°27'39.5"
27	117°19'51.60"	23°01'32.88"	57	108°05'57.7"	21°27'50.1"
28	116°34'55.20"	22°45'05.04"	58	108°06'01.6"	21°28'01.7"
29	115°13'01.20"	22°08'03.12"	59	108°06'04.3"	21°28'12.5"
30	114°02'09.60"	21°37'02.64"	60	北仑河主航道中心线 向海侧终点	

베이룬강의 주요 항로의 중심선은
바다 쪽이 끝지점이다.

표 2. 해남 수역의 해역경계 통제 지점 위치 좌표

순서	경도	위도	순서	경도	위도
序号	经度	纬度	序号	经度	纬度
A1	108°26'24.88"	19°24'06.50"	33	111°27'00.00"	19°51'57.96"
A2	109°20'00"	20°07'00"	34	111°23'42.00"	19°46'54.84"
A3	111°00'00"	20°18'32"	35	110°38'56.40"	18°31'10.56"
			36	110°37'40.80"	18°30'24.12"
			37	110°15'07.20"	18°16'00.84"
			38	110°09'25.20"	18°12'45.36"
			39	109°45'32.40"	17°59'03.12"
			40	109°43'04.80"	17°59'03.48"
			41	109°34'26.40"	17°57'18.36"
			42	109°03'39.60"	18°03'10.80"
			43	108°50'42.00"	18°08'58.56"
			44	108°33'07.20"	18°21'07.92"
			45	108°31'40.80"	18°22'30.00"
			46	108°31'08.40"	18°23'10.32"
			47	108°28'44.40"	18°25'34.68"
			48	108°24'46.80"	18°49'13.44"
			49	108°23'20.40"	19°12'47.16"

표 3. 내하 통제 구역 기지점 위치 좌표

내하 제한구	경계 명칭	지명	지점 상세 묘사	지점 순서
장강 간선	기점	운남 수이푸	상자바 대교	B1
				B2
	종점	장쑤 류허	류허 하류의 류흑 옥과 충밍섬의 스 차오 강 하류의 연결선	B3
				B4
서강 간선	기점	광시 난닝	난닝 민생 부두	B5
				B6
	종점	광둥 자오칭	서강간류금리 하 철 선각과 오정강 지류 입구 연선	B7
				B8

点位 序号	经 度	纬 度
B1	104°24'30.60"	28°38'22.38"
B2	104°24'35.94"	28°38'27.84"
B3	121°18'54.00"	31°30'52.00"
B4	121°22'30.00"	31°37'34.00"
B5	108°18'19.77"	22°48'48.60"
B6	108°18'26.72"	22°48'39.76"
B7	112°48'30.00"	23°08'45.00"
B8	112°47'19.00"	23°08'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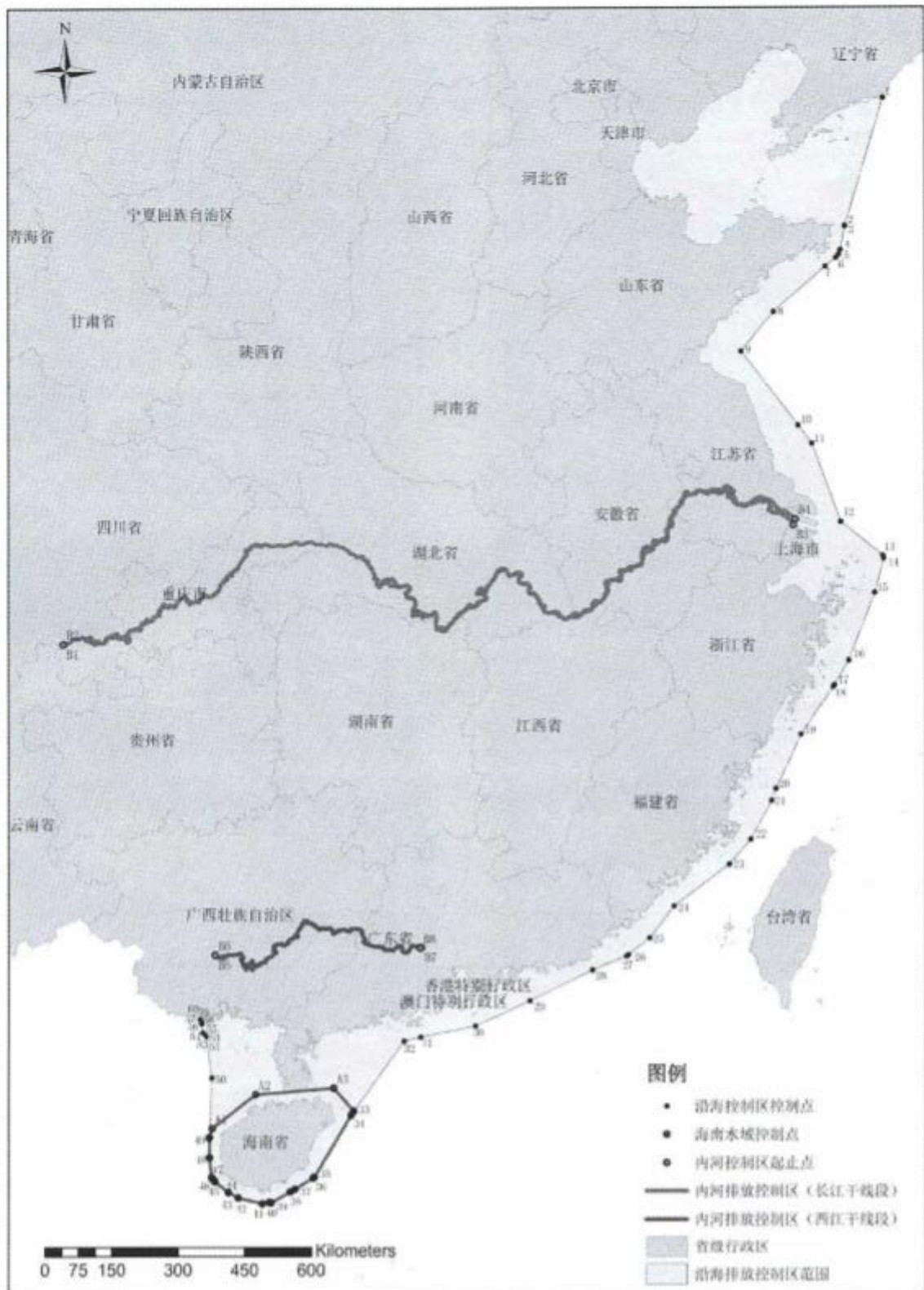


사진 1 배출 제한 구역 범위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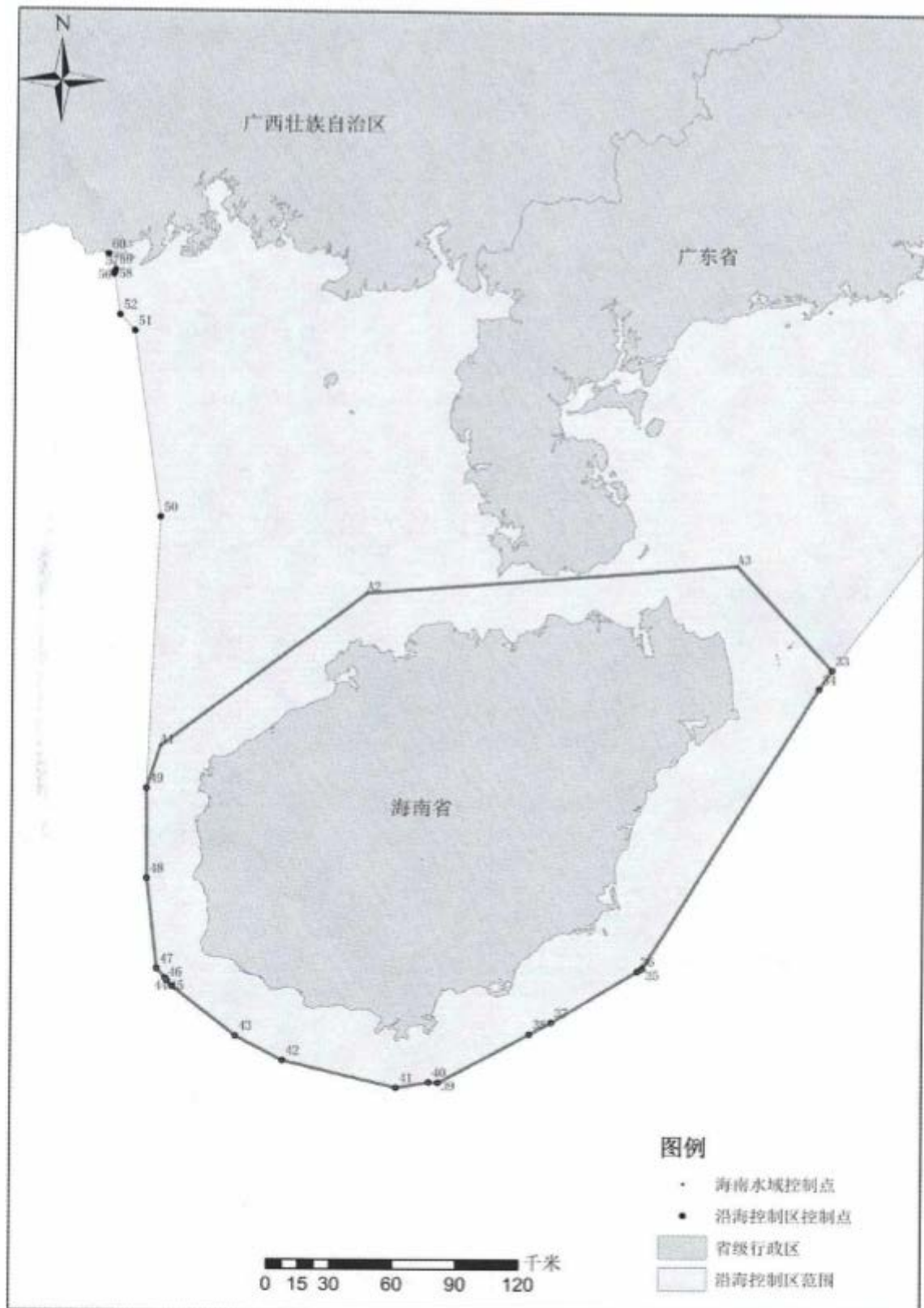


사진 2 연해 배출 제한 구역 해남 수역 범위 약도

5. 통제 요구 세부 사항

(A)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 제한 요구.

1. 2019년 1월 1일부터, 배출 통제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량이 0.5% m/m 이하의 선박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대형 내항선과 내항 작업선은 새로 개정된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선박용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기타 내항선은 국가기준에 적합한 디젤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 연안 제한 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량이 0.1% m/m 이하인 선박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2. 2020년 3월 1일부터,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오염통제장치 등 대체 설비를 사용하지 않은 선박이 배출통제구역에 진입한다면, 이 방안대로 규정된 선박용 연료유 선적만 가능하며, 다른 작업은 허락하지 않는다. .

3. 2022년 1월 1일부터, 연해제한구역 해남도 수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량이 0.1% m/m 이하의 선박용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

4. 상기 명시된 시기에 선박의 황 함유량이 0.1% m/m 이하 선박 연료가 사용되지 않는 선박은 연료 사용 가능성을 평가 받는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해제한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량이 0.1% m/m 이하의 선박용 연료 사용을 요구한다.

(B) NO_x 배출통제강화

5. 2000년1월1일 이후 건조 혹 선박용 디젤발전기를 개조한 국제운항선박의 선박용 디젤발전기 출력이 130킬로와트 초과시 반드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orm Ships(MARPOL)>제1단계의 NO_x배출한제요구에 부합해야한다.

6. 2011년1월1일및 이후 건조 혹 선박용 디젤발전기를 개조한 국제운항선박의 선박용 디젤발전기 출력이 130킬로와트 초과시 반드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제2단계의 NO_x배출한제요구에 부합해야한다.

7,8,9. 중국내항대상(domestic) – 해외 선박 관련 없음.